

## 복지위원회 규정

제정 1994. 2. 21  
제5차 개정 2022. 04. 20

**제1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함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1. 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건의
2. 구내 복지시설(식당, 매점, 자동판매기 등)의 사업자선정, 임대, 계약 및 관리 감독
3. 사업계획 및 예·결산
4. 복지기금의 조성 및 사업수익의 관리 운영
5.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
6. 학생복지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06.21)
7. 그 밖에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(항 변경 및 개정 2016.06.21)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내외의 전임교원, **학생취업지원처장**, **기획처장**, 생활관장,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조대표 2인과 학생을 대표하여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5.11.1., 2019.06.25., 2022.04.20)

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조 개정 2005.11.1)

**제5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**학생취업지원처장**이 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**학생취업지원처장**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7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계 부서의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.

**제10조(평가주기/활용)** 학생복지 만족도 조사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**학생지원팀**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.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 (조 신설 2016.06.21.) (개정 2019.06.25, 2022.04.20)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기획예산과-1219, 2005.11.1)

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